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10836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구합104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4.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15. 한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005,239,96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1. 한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2,656,793,6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9~10행의 "외항선 선원 또는 여객선의 승객"을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고침.

○ 제2면 제13행, 제6면 제7행의 각 "면세"를 각 "면제"로 고침.

○ 제3면 제2행의 "38,005,239,960원" 및 제4행의 "12,656,793,650원"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함.

○ 제4면 제13행의 "담배소비세" 다음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의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3으로 교체함.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자 중 대부분이 담배사업법상 특수용담배를 공급받을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이고, 이 사건 판매업자가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중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중국에 밀수출하도록 불법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담배소비세 면제 사유인 '제조자가 담배를 수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반출할 경우 위 담배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될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정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밖의 처분을 한 자'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특수용담배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등에 대한 판매용'으로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공급한 것은 담배소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반출 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담배소비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업자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중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판매업자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와 같이 수출신고된 이 사건 특수용담배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이를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시킨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판매업자 중 A을 운영하는 F이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수출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담배소비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특수용담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특수용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담배소비세 면제 사유인 '제조자가 담배를 수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 사유를 달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오명희

판사 박우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단위: 원)

연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계
	본세	벌칙 가산세 (30%)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3%)	소계	본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3%)	소계	
2009	1,729,418,000	518,825,400	889,663,800	**3,137,907,200**	864,709,000	86,470,890	444,831,880	**1,396,011,770**	4,533,918,970
2010	543,247,500	162,974,250	193,263,890	**899,485,640**	271,623,750	27,162,370	96,631,940	**395,418,060**	1,294,903,700
2011	3,452,105,500	1,035,631,650	987,292,880	**5,475,030,030**	1,726,052,750	172,605,270	493,646,400	**2,392,304,420**	7,867,334,450
2012	11,505,437,200	3,451,631,160	2,016,016,050	**16,973,084,410**	5,752,718,600	575,271,830	1,008,008,000	**7,335,998,430**	24,309,082,840
합계	17,230,208,200	5,169,062,460	4,086,236,620	**26,485,507,280**	8,615,104,100	861,510,360	2,043,118,220	**11,519,732,680**	**38,005,239,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2)

과세처분내역표

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 계
	본 세	용도변경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 계(A)	본 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 계(B)	
2013년 1월	1,041,625,000	312,487,500	155,306,280	1,509,418,780	520,812,500	77,653,140	598,465,640	2,107,884,420
2013년 2월	993,550,000	298,065,000	138,600,220	1,430,215,220	496,775,000	69,300,110	566,075,110	1,996,290,330
2013년 3월	1,025,600,000	307,680,000	134,148,480	1,467,428,480	512,800,000	67,074,240	579,874,240	2,047,302,720
2013년 4월	259,605,000	77,881,500	31,542,000	369,028,500	129,802,500	15,771,000	145,573,500	514,602,000
2013년 5월	1,368,535,000	410,560,500	153,549,620	1,932,645,120	684,267,500	76,774,810	761,042,310	2,693,687,430
2013년 6월	1,686,631,250	505,989,370	174,060,340	2,366,680,960	843,315,620	87,030,170	930,345,790	3,297,026,750
합계	**6,375,546,250**	**1,912,663,870**	**787,206,940**	**9,075,417,060**	**3,187,773,120**	**393,603,470**	**3,581,376,590**	**12,656,793,650**

(단위: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별지 3)

관계 법령

■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특수용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담배사업법 시행령(2015. 11. 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5. 영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